

만약 유료 세무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고비용을 요하는 “환불 예상 대출”을 피하십시오. 그 대출 비용이 세액 공제 혜택의 많은 부분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수주내로 세액 환급을 받을 것입니다.

선급

만약 올해 여러분이 해당 자녀가 있고 소득 기준에 부합한다면 고용주에게 근로 소득세액 공제 대상 월급에 대한 원천 징수 대신 매달 해당 세액 공제에 따른 환급금을 선불로 월급에 가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W-5양식을 다운 받거나 인근 국세청 사무소에서 구해서 작성한 뒤 고용주에게 제출하십시오. 임금이 지불될 때마다 근로 소득세액 공제에 따른 혜택이 임금이 가산되어 선불 지급될 것입니다. 이 선급액은 연방세, 주정부세, 의료보험, 혹은 소셜 시큐리티 등 어떤 원천 징수 항목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여러분의 고용주는 W-5 양식을 제출한 해당 고용인들에게 이 선급금을 지불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양식은 해당 과세 연도에만 유효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근로 소득 세액 공제 혜택을 선불 지급받고 싶은 때 해마다 고용주에게 새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해당 연도의 아무 때나 고용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2007년 과세기간에 고용주가 지급할 수 있는 선급 근로 소득세액 공제의 최고 한도는 1,712 달러입니다.

근로 소득세액 공제와 복지

근로 소득세액 공제는 저소득층 의료보험 (Medicaid), 생계 안정 지원 임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정부 발행 식료품 구입 지원 쿠폰(food stamp),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지원 등과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을 할 때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빈곤 가구 일시 지원금(TANF)이 이 세액 공제를 받음으로 인해 약간 줄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 정부에 확인해 볼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 소득세액 공제를 통해 받는 돈을 세이빙 어카운트에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액 공제 수혜자는 이처럼 지출되지 않는 돈은 자산으로 계산되어 때로는 수혜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소셜시큐리티 번호들 (SSNs)

근로소득세액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과 자신의 자녀들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들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녀들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소셜 시큐리티 당국 (800-772-1213)에 전화하여 SS-5 양식을 구하십시오. 이 양식을 작성한 뒤 메일로 혹은 직접 제출하면 적어도 2주 후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 (SSN)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을 할 때 자녀들을 부양 가족으로 등재할 때 SSN이 필요하고 또 자녀들이 보육 시설이나 학교에 갈 때도 SSN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가족 구성원들의 SSN을 확보해 두는 것은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지원 및 정보

✓ 국세청 (IRS: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은 소득세를 징수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연방 기관입니다.

전화: 800-829-1040

웹사이트: www.irs.gov

근로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국세청 양식이 필요합니다:

- 근로 소득 공제 일정표(Schedule EIC). 만약 자격이 되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 서류를 여러분의 연말 연방 소득세 정산 때 첨부하십시오. 자녀들이 없는 납세자들은 이 서류를 소득세 공제신청시 첨부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1040A 양식 혹은 1040(미국 개인 소득세 정산) 및 지침서. (자녀가 없는 납세자들은 1040EZ 양식을 사용하여 근로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하십시오.)
- W-5 양식(2004 근로소득세액 공제 선지급 인증서). 근로 소득세액 공제 선지급을 원할 경우 이 양식을 작성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하십시오.

✓ 소득세 업무 자원단체 (VITA: Volunteer Income Tax Assistance)는 국세청이 후원 프로그램으로 무료로 소득세 관련 업무 지원을 해줍니다. VITA 사이트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1,2,3월 중에 지역 신문에 게재되는 광고를 참조하거나 지역 도서관 혹은 사회 봉사 기관들에 문의해 보십시오.

✓ AARP Tax-Aide는 저소득 및 중산층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으로 특히 60세나 그 이상의 고령층 인구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888-227-7669

웹사이트: www.aarp.org/money/taxaide

✓ Taxpayer Advocate Service 는 납세자가 국세청과의 분쟁이 생길 경우 납세자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독립 기관입니다.

전화:877-777-4778

TTY: 800-829-4059

웹사이트: www.irs.gov/advocate

소비자 행동(Consumer Action)

www.consumer-action.org

221 Main Street, Suite 480
San Francisco, CA 94105
415-777-9635
TTY: 415-777-9456

hotline@consumer-action.org

523 W. Sixth Street, Suite 1105
Los Angeles, CA 90014
213-624-8327

중국어, 영어, 그리고 스페인어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소책자를 위한 자금은 소비자 행동(Consumer Action)의 자금관리 프로젝트에 의해 제공됐습니다. 소비자 행동의 자금관리 프로젝트는 Griego v. Rent-A-Center 단체 소송 합의에 의한 cy pres로 창안됐습니다. ©소비자행동 2007

소비자 행동 발행물 (A Consumer Action Publication)

1040

Refund

열심히 일한 댄가를 받으세요

저소득 근로계층 납세자들은 연방 근로 소득세액 공제 혜택을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세액 공제(EITC)

근로 소득세액 공제제도는 저소득 근로계층 납세자들이 연방세 관련 신청 양식을 제출할 경우 보다 많은 돈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세액 공제(tax credit)란 연방 정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 들므로 인해 보다 많은 원천 징수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녀가 있는 유자격 납세자라면 고용주에게 여러분의 월급에 근로소득 세액 공제 후 받을 환급금을 선불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통상적으로 연말 정산 신청을 하지 않는 극 저소득층일지라도 연방 소득세 환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소득 기준선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정되어 있지만 저소득 미혼 가구, 혹은 저소득 무자녀 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부모나 손자 손녀를 기르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도 또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심지어 해당 과세 기간의 마지막 날에 자녀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부모 중 하나 혹은 두 사람 모두가 그 해에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해당 소득이 기준선에 부합할 때는 자녀 부양 저소득 가구가 누리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로 소득세액 공제 기준 소득은 매 해마다 인플레이션에 맞추어 그 소득 기준선이 변하며 또한 수혜자의 자격 조건 즉 자녀 존재 여부 및 얼마나 많은 자녀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미혼인지 결혼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준선이 광범위하게 달라집니다. 자격 기준선과 예상 환급액은 이 팜플렛의 다른 섹션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2007년 과세기간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세액 공제 금액은 자녀가 없는 납세자인 경우 최고 428 달러까지 혹은 두 자녀 이상인 경우 최고 4,716 달러까지 입니다. 해당 환급 금액은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세이빙 어카운트에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소득이

일정 기준선에 있거나 그보다 적어야 합니다. (소득을 계산할 때 이혼 부부중 자녀를 기르는 측에 지불하는 자녀 양육비는 빼도 됩니다.) 농장 소유주나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공제 자격이 있습니다.

근로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셜시큐리티 넘버(SSN)가 있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라면 역시 자격이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원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으로 미국에서 살 수 있거나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그린카드를 보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 소득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은 “조정된 총 소득”(AGI)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자신의 소득이 지난 해들과 거의 비슷하다면 총 소득 조정액을 계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난 해의 소득세 환급액을 보는 것입니다. 그 첫 페이지의 가장 아래에 명기되어 있는 금액이 그 해 여러분의 조정 총소득이었습니다. 만약 전 해에 1040EZ 양식을 제출했다면 조정 총소득액은 네번째 라인, 즉 “소득(income)” 섹션란 아래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올해의 조정 총소득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원하시면 “조정 총소득 산정”란을 참조하십시오.)

만약 자신의 전 년도 월급이 상당히 높았다고 하더라도 올해 정리 해고를 당했거나 근로 시간이 줄었을 경우 근로소득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따로 분리하여 소득 신고를 하거나 혹은 외국으로 부터 소득을 올리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 뮤추얼 펀드, 채권 등과 같은 투자 수익이 2,900달러 이상인 경우에도 근로소득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자녀 부모의 소득 기준액

자녀를 둔 부모가 근로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자녀들의 소셜시큐리티 및 기타 정보들이 수록된 근로소득공제 일정표 (Schedule EIC)를

연말 정산 서류 제출시 부착하십시오.

근로소득세액 공제 기준 소득은 매 해마다 인플레이션에 맞추어 그 소득 기준선이 변합니다. 2007년도 자녀를 둔 부모의 조정 총소득 기준액은:

- 자녀를 하나를 둔 독신 부모의 경우에는 33,241 달러, 자녀가 하나인 부부 커플의 경우엔 35,241 달러입니다. 최고 2,853 달러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둘 혹은 그 이상의 자녀를 둔 독신 부모의 경우 37,783 달러이고 부부인 경우에는 기준액이 39,783 달러입니다. 최고 4,716 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자격 여부

근로 소득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녀가 19세 미만이거나 혹은 그들이 풀 타임 학생인 경우 24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영구적으로 지체 장애인 자녀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해당되는 자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아들, 딸, 입양한 자녀, 이복 자녀, 또는 손자나 손녀.

- ✓ 형제, 자매, 이복 형제, 이복자매, 여러분이 자신의 친 자녀처럼 여기고 키우는 조카딸이나 아들.

- ✓ 해당 위탁 아동.

여러분과 여러분의 해당 자녀들은 반드시 미국에서 해당 과세 연도의 절반 이상을 거주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민이 아니고 거주자라면 반드시 해당 과세 연도 기간 전체를 미국에서 거주했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자녀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거주하는 집에 해당 과세 연도의 절반 이상을 거주했어야 합니다. 해당 과세 연도에 태어났거나 사망한 자녀들이 그 해 과세 연도동안 여러분과 같이 계속 함께 거주한 경우라면 역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자녀 저소득 가구

자녀들이 없는 25- 65세의 매우 낮은 소득을 가진 독신들 혹은 결혼한 부부들은 비록 매달 그들의 월급에 선불 지급을 받지 못하는 못한다 하더라도 428

달러까지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 과세 연도에는 독신 가구는 12,590 달러 이하의 소득자 이어야 하고 분리 신고를 하지 않고 연합 신고를 하는 부부의 경우 14,590 달러 이하의 소득자이어야 합니다. 해당인이 타 가구의 부양인 혹은 부양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정 총소득 산정

많은 경우들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의 조정 총소득은 자신의 원래 총소득과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의 경우 소득 감면을 받아 조정 총소득이 원래 총소득보다 줄어들거나 수입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에는 개인 퇴직연금 적립계좌(IRAs: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납부금, 학자금 대출(Student Loans) 이자 납부, 수업료(Tuition) 및 과외 비용, 이사 비용들, 부분적인 자영업 세금, 자영업자 의료 보험료 및 퇴직 연금 적립금들, 이혼 수당(Alimony Payments)등이 있는데 총소득에서 감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정 총소득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정기적인 평균이나 항목별 공제액을 빼지는 마십시오. 만약 지난해는 독신 상태로 소득 신고를 했었고 올해에는 연합 신고를 할 계획이라면, 자신의 전년도 조정 총소득액과 배우자의 전년도 조정 총소득액을 합산해서 산정해 보면 올해의 연합 조정된 총소득액을 예측하여 볼 수 있습니다.

세무 신고

세무 신고를 할 때 국세청 (IRS)에 근로 소득세액 공제액을 문의해 보거나 혹은 스스로 금액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공제 가능액을 계산하기 위해 국세청의 ‘근로 소득세액 공제 계산표’ 를 이용하십시오. 만약 자격 요건을 갖춘 자녀를 둔 경우라면 국세청의 근로소득 공제 일정표를 소득세 연말 정산서에 부착하십시오.

다수의 지역 사회에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소득세 신고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VITA)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 및 정보”란을 참조하십시오.